

<b>웅지세무대학교</b>	<b>장 학 규 정</b>	문서번호	5-1-01(E)-0
		제정일자	04.03.01
		최근개정일자	23.06.08.
		주관부서	교학처
		홈페이지공개	공 개

**웅지세무대학교 교학처**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웅지세무대학교(이하 '본 대학'이라 한다)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본 대학의 장학 대상자는 신입생 및 재학생을 그 대상으로 하며, 이 규정의 의해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.

**제3조(장학금의 종류)** 장학금의 종류는 교내·외 장학금으로 구분하며, 그 세부내역은 [장학규정 별지 제1호]와 같다.

**제4조(장학금의 지급범위)** ① 장학금의 총예산은 등록금 수입총액의 10%이상으로 하며 그 지급범위는 [장학규정 별지 제1호]와 같다.

② 특별장학금은 장학금의 총예산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30%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특별장학금의 세칙은 [장학규정 별지 제2호]와 같다.

③ ~~삭제 <2013.07.31.>~~

④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국가근로장학금 및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3.07.31., 2015.02.13., 2021. 09. 14.>

⑤ ~~삭제 <2021.09.14.>~~

**제5조(추천)** 장학생 추천은[장학규정 서식 제2호]에 의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<개정 2013.07.31.>

**제6조(장학 대상자)**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선발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07.31.>

1.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.
2.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. <개정 2021.09.14.>
3.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.
4. 학생자치기구임원 및 근로학생 <개정 2015.08.01.>
5. 본 대학 재직 교직원 및 법인임직원의 직계가족 <개정 2014.01.23., 2015.02.13.>  
단, 시간제 임용 교직원은 제외한다. <개정 2015.02.13.>
6.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명예를 드높인 자.

7.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훈청에서 지정된 자.
8. 교내 학년별 대표 및 생활관 자치회임원, 도서관 자치회임원.
9. 본 대학 재학 중인 가족 중 1인.
- ~~10. <삭제>~~
- ~~11. <삭제>~~
12. 기타 총장이 승인한 자.
13. 장애등급을 가진 자. <신설 2015.08.01.>
- ~~14. 삭제 <2021.09.14.>~~
15. 소년소녀가장(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포함)인 자 <신설 2015.08.01.>
- ~~16. <삭제>~~
- ~~17. <삭제>~~
- ~~18. <삭제>~~
- ~~19. <삭제>~~
20. 재학 중 회계사,세무사,감정평가사, 관세사 등 1차에 합격한자 및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. <신설 2016.05.23.>
- ~~21. <삭제>~~
22.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. <신설 2021.09.14.>
- ~~23. 삭제 <2022.08.30.>~~

**제7조(지급시기)** 장학금 지급 시기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**제8조(장학금 신청)** 장학금 수혜 희망자는 '장학금 신청서'[장학규정 서식 제1호] 및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에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07.31., 개정 2015.02.13.>

**제9조(장학증서)** 본 대학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총장이 수여하는 장학증서[장학규정 서식제3호]를 수여 받는다.

~~**제10조 삭제** <2013.07.31.>~~

**제11조(결격자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. <개정 2012.04.09.>

1. 각종 징계처분을 받은 자.
2. 휴학자 및 자퇴 또는 제적된 자(단, 등록 후 휴학한자는 제외) <개정 2013.07.31.>
3. 입학장학생의 경우 자격 조건 미달자.
4. 특별장학생대상자 중 국가장학금 유형 I 심사기준 미통과자 <개정 2021.09.14.>
5. 보훈장학생은 백분위 환산점수 70점 미만자.
6. 서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학생 선발 및 그 지급이 잘못된 자.

7. 기간 내 서류 미제출자. 단, 추가신청자는 제외.

~~8. 삭제~~

9. 공로 장학금은 직전학기 및 당해학기 아래사항 해당자 <개정 2015.02.13., 개정 2021.09.14. 개정 2022. 04. 05.>

가. 평균평점 3.0미만자, 생활관 강제퇴관자.(단, 대외홍보대사 장학금은 2.0 이상) <개정 2022. 04. 05.>

나. ~~삭제~~ <2021.09.14.>

~~10. 삭제~~ <2015.02.13.>

11. 가족장학금의 경우 가족 중 1인 이상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.0미만인 자. <개정 2014.01.23., 개정 2021.09.14.>

~~12. 삭제~~

~~13. 삭제~~ <2021.09.14.>

14. 소년소녀가장장학금 및 학업장려장학금 대상자의 경우,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.0미만인 자 <신설 2021.09.14.>

15. 교직원장학금 대상자의 경우,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.0미만인자. <신설 2021.09.14.>

16. 복지장학금 대상자의 경우,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.0미만인자.

(단, 기초~차상위는 평균평점이 2.0미만인자이고, 소득구간이 1~3구간인 경우에는 평균평점이 2.0이상 3.0미만인자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제한) <신설 2023. 02. 03.>

**제11조의2(장학금의 반환)** 장학금 대상자가 제11조(결격자) 1호, 2호에 해당할 경우, 당해학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전액 반환한다. 단, 선감면한 장학금 대상자는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장학금을 반환한다.(반환금액의 백원단위는 절사) <개정2015.08.01.>

**제11조의3(수혜기간의 제한)**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정규학기를 초과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1.09.14., 개정 2022.08.30.>

**제12조(장학생교체)** 장학대상자가 제11조에 해당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 추천의뢰를 받아 교체할 수 있다.

**제13조(장학금 지급중지)** ①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수혜자격을 상실한다.

②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.

~~③ 삭제~~ <2021.09.14.>

④ 제13조 각 호에 의하여 지급 중지된 장학금은 해당학기 타 용도의 장학금으로 집행 할 수 있다.

**제14조(보칙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공로 장학금 지급제한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 단, 직전학기 성적제한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1년 10월 6일 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2년 1월 9일 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2년 4월 9일 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입학성장학금 및 재학생성적장학금, 총학생회 임원장학금, 편입성장학금 기준 적용일은 2014년 1학기부터이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규정의 개정)**

1. 제4조제4항 “단, 매월 지급하는 공로 및 봉사, 근로장학금은 예외로 한다”를 “단, 매월지급하는 봉사, 근로장학금은 예외로 한다”로 개정하다
2. 제4조제5항 “장학금지급은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한다”를 신설하다
3. 제6조제5호 “본 대학 재직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의 직계가족 중 1인 [재직교직원이란 겸임교원이상, 계약직원(사무직) 이상]”을 “본 대학 재직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의 직계가족.

단, 시간제임용 교직원은 제외한다”로 개정하다

4. 제8조 “학생처”를 “해당부서”로 개정하다

5. 제11조제9호 “공로 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 3.0미만자, 생활관 별점 7점 이상인자, 자기 학습 불성실자” 를 “공로 장학금은 직전학기 및 당해학기 아래사항 해당자.

가. 성적 3.0미만자, 생활관 별점 7점 이상인 자, 자기학습 불성실자.

나. 결격자 중 수업도우미는 자기학습 불성실 자 포함한다”로 개정하다

6. 제11조제10호 “3학년 편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3.5미만자”를 삭제하다

7. [별지 제1호]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“장학금의 종류 및 시행세칙”을 “장학금의 종류 및 시행세칙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”로 개정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제2조(규정의 개정)

1. 제6조(장학대상자)

4. “총학생회 임원”을 “학생자치기구임원 및 근로학생”으로 개정하다

8. “교내 학년별 대표 및 생활관 자치회임원, 도서관 자치회임원”을 삭제하다.

13. “장애등급을 가진 자”를 신설하다.

14. “다문화 가족인 자”를 신설하다.

15. “소년소녀가장(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포함)인 자”를 신설하다.

16. 편입학 학생인 자 <신설 2015.08.01.>

2. 제11조의2(장학금의 반환)

장학금 대상자가 제11조(결격자) 1호, 2호에 해당할 경우, 당해학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”다음 각 호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한다.”를 “전액 반환한다.” 단 선감면한 장학금 대상자는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제6조 제2항에 준하여 장학금을 반환한다.(반환금액의 백원단위는 절사)한다로 개정하다 <2014.06.26., 2015.08.01.>

1. 해당 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.)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(입학금 포함)을 반환한다.<삭제 2015.08.01>

2.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, 장학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 ~~삭제~~←2015.08.01.>

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	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	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	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	반환하지 않음

**부 칙 <2016.00.00.>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개정 2016.03.22.>**

이 규정은 2016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. 단, [별지 제1호] 제1조 나)항 재학생장학금 중 학업장려 장학금의 경우 2016년 3월 1일 이후 합격자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제1호] 장학금의 종류 및 시행세칙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<개정 2015.02.13., 2015.08.01., 2015.11.11.>

**부 칙 <개정 2016.05.23.>**

이 규정은 2017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. 단, 편입생장학금, 비교과과목우수장학금, 학습법(튜터링) 우수장학금, 학업장려장학금(3학년 2학기 재학생), 학자금융자이자보전장학금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**부 칙 <개정 2017.08.02.>**

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개정 2018.04.11.>**

이 규정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개정 2020.02.10.>**

이 규정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개정 2020.11.30.>**

이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장학금의 종류 및 시행세칙의 기준 적용일은 2020년 1학기부터로 한다.

**부 칙 <개정 2021.01.15.>**

이 규정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개정 2021.09.14.>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별지 제1호 장학금의 종류 및 시행세칙의 기준 적용일은 2022년 1월 1일부(웅지특별장학금 제외)로 한다.

부 칙 <개정 2022.04.05.>

이 규정은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22.08.30.>

이 규정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23.02.03.>

이 규정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23.06.08.>

이 규정은 202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]

## 장학금의 종류 및 시행세칙

1. 교내 장학금

가. 입학생 장학금 <개정 2013.07.31., 2014.06.26., 2015.08.01., 2020.11.30., 2021.01.15., 2021.09.14. 2022.08.30.>

구 분	선정기준	등록금 장학혜택	수혜 조건
입학장학금 A	3개영역의 합이 4등급 이내	전학년 등록금 전액면제	학과별 재학인원 상위20%이내 (직전학기)
입학장학금 B	3개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	2년간 등록금 전액면제	
입학장학금 C	3개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	1년간 등록금 전액면제	
정시전체수석	입학사정원칙 (일반전형)	1년간 수업료 면제(입학금 제외)	직전학기 평점 4.0 이상
수시전체수석			
학과별 정시수석		1학기 수업료 50% 면제 (입학금 제외)	직전학기 평균평점 4.0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8학점 이상
학과별 수시수석			
입학성적우수자 생활관 장학금		생활관비 전액 면제	

\* 입학장학금(A,B,C)는 수능 3개영역(국어, 영어, 수학)의 등급 합산을 적용

ㄱ. 입학생 장학금은 일반전형 등록자만 지급 <개정 2021.09.14.>

~~ㄴ. 삭제 <2021.09.14.>~~

ㄷ. 입학성적우수자 생활관 장학금 자격조건 <신설 2020.11.30., 개정 2021.09.14.>

- 수시 및 정시 일반전형 등록자:

내신 3등급(3~3.99 등급, 입시총점 280점)이내 또는 수능영어 성적 3등급이내

- 검정고시 출신 등록자는 제외(단, 일반전형 등록자이면서, 해당학년도 수능영어 3등급 이내이면 지급)

나. 재학생 장학금 <개정 2015.02.13., 2015.08.01., 2015.11.11., 2016.05.23., 2017.08.02., 2018.04.11., 2020.11.30., 2021.01.15., 2021.09.14., 2023. 02. 03., 2023. 06. 08.>

장 학 종 류	선정방법 (인원)	지 급 관	대상자	지급액
공로장학금	총학생회	임기 기간 (해당 학기)	총학생회 회장	수업료의 100%
			총학생회 부회장	수업료의 70%
			총학생회 부서장	수업료의 30%
	대의원회	임기 기간 (해당 학기)	대의원회 의장	600,000원
			대의원회 부의장	480,000원
			대의원회 임원	300,000원
	학보사	임기 기간 (해당 학기)	편집국장	800,000원
			학보사임원	600,000원
	학과학년별 대표	해당학기	학과학년별 대표	100,000원
	대 외 흥 보 대 사	해당학기	대상자 전원	500,000원 (5명이내)

장 학 종 류	선정방법 (인원)		지 급 기 간	대상자	지급액
근로장학금	장애학생도우미		해당 학기	대상자 전원	장학재단규정 지급기준
	국가근로		해당 학기	대상자 전원	장학재단규정 지급기준
보훈장학금	자녀	국가유공자 직계자녀	해당 학기	대상자 전원	등록금 전액 (국고 50% + 학교 50%)
	본인	본인이 국가 유공자			학교 100%
가족장학금	재학생중 가족의 경우		해당 학기	대상자 중 1인	수업료의 35%
교직원장학금	재직교직원의 직계가족		전학기	대상자 전원	수업료 전액 (입학금 제외)
기타장학금	새터민장학금		해당학기	대상자 전원	등록금 전액 (국고50% : 학교50%)
	장애학생장학금		해당학기	대상자 전원	장애등급 및 소득분위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함
	다자녀 장학금		해당학기	대상자 전원	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라 별도로 정함
	소년소녀가장 (아동복지시설퇴소자포함)		해당학기	대상자 전원	1,000,000원
학업장려장학금 *	재학 중 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 관세사 시험 합격자	1차합격	유예기간내 잔여학기	대상자 전원	수업료 반액
		최종합격	잔여학기	대상자 전원	수업료 전액
	재학 중 공무원 시험 합격자	필기합격	해당학기	9급 대상자 전원	수업료 반액
		최종합격	잔여학기	7급 이상 대상자 전원	수업료 전액
·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인정되는 자 · 기타 총장 또는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			총장에게 재가 받은 지급 기준		
복지장학금	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함.				

ㄱ. <삭제>

ㄴ. 지급율에 의한 장학금 지급 시 천원단위는 절사한다. <2014.01.23.>

ㄷ. <삭제>

ㄹ. 학업장려장학금의 지급기준

- 지급시기: 학기중 합격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지급

(학업장려장학금은 학기별 중복 수혜 불가)

- 학업장려장학금의 학기개시는 1학기는 3월 1일, 2학기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.

-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필기합격자는 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만 해당한다.

ㅁ. 기타 특별한 경우, 총장의 승인하에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2. 교외 장학금 <개정 2013.07.31. 개정 2021.09.14.>

가. 교외장학금은 국가기관, 사회단체, 기업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장학단체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.

나. 교외장학단체에서 해당 학과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학부(과)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선정한다.

다. 해당학과 및 인원지정이 없을 때에는 교외장학생수의 학과별 비율을 참작하여 교학처장이 배정하고 학과장 추천을 받아 총장이 선정한다.

라.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교비에 입금시킨 후 지급토록 한다.

## 3. 선정시기 <신설 2021.09.14.>

장학대상자 선정은 매 학기 단위로 등록기간 전에 선정하는 것으로 하되, 장학종류에 따라 학기 중에도 선정할 수 있다.

## 4. 선정기간 및 방법 <신설 2021.09.14.>

가.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나.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, 소급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.

## 5. 지급시기 <신설 2021.09.14.>

특별한 규정과 사유가 없는 한 매 학기초로 한다.

## 6. 지급방법 <신설 2021.09.14.>

가. 학비감면을 원칙으로 하며, 등록된 자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

나. 장학금 이중수혜 대상이 될 경우에는 교외장학금,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하되, 후순위 장학금 중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의 경우 우선 또는 최소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다. 장학금은 등록금(입학금+수업료)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교외장학금의 경우 장학단체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라, 이를 초과할 수 있다.

[별지 제2호]

## 복지장학금 시행세칙

제1조(목적)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업에 정진 할 수 있도록 학비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자 선정) 국가장학금 수급분위별로 선정한다. <개정 2014.01.23., 2017.08.02.>

제3조(선정방법)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로 선정한다. <개정 2014.01.23., 2017.08.02.>

1. <삭제>

2. <삭제>

3. 복지장학금 : 국가장학금 수급대상자 중 특별장학금 예산범위에서 위 1호 및 2호 장학금 및 입학금을 제외한 잔여예산에서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4.01.23., 2015.08.01.>

제4조(선정기준) 국가장학금 규정을 준용한다.





[서식 제3호]

제 호

## 장 학 증 서

장학종류 :

학 과 :

수험번호 :

성 명 :

위 학생은 학년도 제 학기 ○○○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대학 장학규정에 따라 소정의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웅 지 세 무 대 학 교 총 장

[서식 제4호]

## 장학금 수혜(비수혜) 확인서

성 명 :  
생년월일 :  
학 과 :  
학 년 :  
학 번 :

단위 : 원

년도	학기	장학명	구분	학년	장학금액

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**웅지세무대학교총장**